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4/2/1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의무를 규정화하며, MMF 시가평가 시행 (2023.4.1.)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(제3-24조의3)
 -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
 -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
-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(제7-24조 제1항 및 제4항)
 - 증권형 공모펀드의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,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'온라인 전용 펀드' 설정을 의무화
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
-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(직 · 간접 병행)를 반영한 평가 방식 규정(제7-36조 제1항)
 -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직접 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%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 풀MMF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